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적극 홍보 촉구안

의안 번호	1401
----------	------

발의연월일 : 2017. 11. .

발 의 자 : 이효상 의원 외 9명

1. 주 문

- 안전대한민국이지만 정작 국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할 수 있는 소중한 재산권 보호의 출발점인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행정적인 노력이 부족함.
- 이에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각 구·군이 재난배상책임 보험의 무가입 대상시설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나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임.
- 가입자는 10여 개의 손해보험회사 중 선택해 가입하면 되며, 최대 신체피해(대인)는 1인당 1억 5천만 원, 재산피해(대물)는 1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지만, 미 가입자는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함.
- 가입 의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신규 및 기존시설 구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2018년 1월 1일부터 부과할 계획이나 이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각 구·군이 안내문을 발송하고 캠페인을 펼치는 등 보험가입을

독려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3. 건 의 문 : 따로 붙임

제203회 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7. 11. 20(월) 11:00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적극 홍보 촉구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이효상외 9명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적극 홍보 촉구안

현대사회는 재난의 위협에 늘 노출돼 있다.

지난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와 2014년 고양 버스터미널 화재, 그리고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등 최근 몇 년 사이 일상 속 쉽게 접하는 시설에서 화재와 폭발, 붕괴와 같은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음식점, 숙박업소 등 19개 시설을 재난취약시설로 지정 하고 이들 시설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제도'를 도입했다.

화재나 폭발, 붕괴 같은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사람 누구나 손해배상을 통해 차별없는 안전복지 수혜를 받도록 한 조치다.

재난취약시설로는 1층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지하상가, 장례식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경마장, 경륜·경정장 등 총 19종이다.

이들 시설은 당초 지난 7월초 책임보험에 의무가입을 완료하도록 했지만 정부는 자발적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조치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하지만 울산지역 내 대상 시설의 책임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구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8월 31일 기준 총 630개 대상시설 중 책임보험에 가입한 시설은 326곳으로 가입률은 51% 수준에 그치고 있다.

15층 이하 아파트의 경우 그나마 가입률이 78%로 높은 편이지만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인 숙박시설과 1층 음식점은 절반 수준의 가입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를 비롯한 행정당국은 책임보험 가입 유도를 위한 홍보 등의 활동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대표적 예로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중앙정부차원에서 열린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기간 동안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관련된 그 어떤 홍보활동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훈련의 모토가 국민이 일상 속 실현하는 안전 대한민국이지만 정작 국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할 수 있는 소중한 재산권 보호의 출발점인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행정적 노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화재와 폭발 등의 재난에 대피훈련 등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훈련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면 오히려 책임

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각 구·군이 지금이라도 재난배상책임보험의무가입 대상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하는 바이다.

방송과 언론, 그리고 홍보 현수막을 통해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독려해 시민들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행정적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재난은 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다.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라는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지혜를 되새기길 바란다.

2017년 11월 20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이효상의원 외 9명